

부산광역시 사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. 6. 5 ----- 사하구청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06. 6. 5

다. 상 정 일 자 : 2006. 6. 15

(제139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,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기획감사실장 황해룡)

### 가. 제안사유

고문변호사의 임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해촉 사항의 신설 등 고문변호사 운영 관련 제도의 미비점 보완 및 조문의 자구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임

### 나. 주요골자

- 고문변호사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함(안 제4조)
- 고문변호사 해촉 조항을 신설함(안 제4조의2)
- 기타 일부 자구를 수정함(안 제1조 내지 제3조, 제6조)

## 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부산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」
- 입법예고 : 2006. 5. 25 ~ 6. 1(7일간) ▷ 제출의견 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조례 개정건은 우리구 고문변호사 운영과 관련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, 조문의 자구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

-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
- 종전에 없던 고문변호사의 해촉 사항인
  -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나
  - 고문변호사의 직무를 기피하거나
  - 우리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어길 경우에는해촉할 수 있다는 것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이 옳을 것으로 사료 됨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략

6. 토 론 요 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